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28호
----------	--------

제출년월일 2025. 5.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운영사항 등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학교급식법」에 따른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4조)
- 다.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관련 사항 정비(안 제7조)
- 라. 급식센터의 기능 신설(안 제8조)
- 마.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4. 2. ~ 4. 22. (20일)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 부서

가) 중앙부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나) 경 기 도 : 친환경급식센터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를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이”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을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김포시장” 을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급식 등” 을 “학교급식” 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제3조제1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급식 등” 을 “학교급식” 으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와 함께 노력” 을 “노력” 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 “지원센터” ” 를 “ “급식센터” ”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 할” 을 “지원할”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센터” 를 “급식센터”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 를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로, “어린이집·고등학교 등은” 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위원회” 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 를 “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6조” 로, “심의위원회” 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급식센터 담당 국·소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급식센터 담당 과장, 보건위생업무 및 교육업무 담당 과장, 김포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를 각각 “급식센터”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심의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의위원” 을 “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업체 등과 협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⑤ 민간위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급식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급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급식센터”로, “일부를 법”을 “일부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급식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2. 유통 및 공급관리
 3. 김포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안정적 급식 공급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되,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학교급식 등”을 “학교급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자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를 “지원대상자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소		농업정책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농업정책과장 장 오 규
	팀장 직위·성명	공공급식센터팀장 양 성 지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오 새 림(☎428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p>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u>품질인증 농산물</u></p> <p>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p>	<p><u>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 <u>다음과</u> -----.</p> <p>1. ----- ----- <u>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이</u> ----- -----.</p> <p>2. ----- --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 <u>따른</u> ----- ----- ----- ----- ----- -----.</p> <p>가.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에 <u>따른 품질인증 농산물</u></p> <p>나.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u></p>

현행	개정안
<p> <u>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에 의한 <u>친환경농산물</u> 다. 「<u>축산법</u>」 및 「<u>축산물위생관리법</u>」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u>축산물</u>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u>축산물</u> 라. 「<u>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u>」에 의한 <u>품질인증품</u> 마.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김포시장이 인증한 <u>농특산물</u> </p> <p> 3. “<u>식재료</u>”라 함은 <u>학교급식</u>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p> <p> 4. (생략) </p> <p> 제3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p> <p> ② 시장은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u>강구</u>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p> <p> ③ 시장은 <u>학교급식</u> 등에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등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u>학교급</u> </p>	<p> <u>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친환경 농산물</u> 다.----- 및 「<u>축산물 위생관리법</u>」에 따른 ----- ----- ----- 라. 「<u>식품산업진흥법</u>」에 따른 <u>품질인증품</u> 마. ----- <u>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3. ----- <u>학교급식</u>----- ----- ----- 4. (현행과 같음) </p> <p> 제3조(지원범위) ① ----- ----- <u>범위</u> ----- ----- ----- ----- <u>마련</u>----- ----- ③ ----- <u>학교급식</u>----- ----- ----- <u>노력</u>----- </p>

현행	개정안
<p>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p>	<p>----- ----- ---</p>
<p>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제4조(지원대상) ----- ----- -----.</p>
<p>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 대상 학교</p>	<p>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 -----</p>
<p>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p>	<p>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p>
<p>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p>	<p><삭 제></p>
<p>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4. <u>그 밖에</u> ----- -----</p>
<p>제5조(지원방법) ① (생략)</p>	<p>제5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p>	<p>② ----- ----- 범위----- ----- ----- “급식센터” ----- ----- -----.</p>
<p>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직 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p>	<p>1. ----- ----- ----- ----- ----- 따른 ----- -----.</p>

현행	개정안
<p>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p> <p>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p> <p>4. (생략)</p> <p>③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분담,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금액 산정,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어린이집·고등학교 등은 시장에게</p>	<p>2. ----- ----- ----- ----- ----- ----- ----- 지원할 ----- --.</p> <p><삭 제></p> <p>4. (현행과 같음)</p> <p>③ ----- ----- --- 급식센터 ----- ----- -----.</p> <p>제6조(지원신청) ① ----- -----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p>

현행	개정안
<p>직접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p> <p>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p> <p>③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시의 교육 및 농정업무 실무과장</p> <p>2. 김포교육지원청의 업무관련 과장</p> <p>3. 학부모 단체 추천인</p> <p>4. 농민(생산자)단체 추천인</p> <p>5. 교원단체 추천인</p>	<p>경우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p> <p>②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p> <p><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6조-----</p> <p>-----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현행	개정안
<p>6. <u>급식관련 종사자 대표</u></p> <p>7. <u>시민단체 추천인</u></p> <p>8.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③ <u>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u></p> <p>④ <u>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⑤ <u>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 참여를 제한</u></p>	<p>③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급식센터 담당 국·소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u></p> <p>④ <u>당연직 위원은 급식센터 담당 과장, 보건위생업무 및 교육업무 담당 과장, 김포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u></p> <p>⑤ <u>민간위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⑥ <u>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u></p> <p>⑦ <u>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⑧ <u>위원회-----</u> <u>-----.</u> <u>----- 위원--</u> <u>-----</u> <u>-----</u></p>

현행	개정안
<p>할 수 있다.</p> <p>1. <u>학교급식지원센터</u>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p> <p>2. <u>학교급식지원센터</u>에서 상정한 학교급식 시책에 대한 심의</p> <p>3.·4. (생략)</p> <p><신설></p> <p>5.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p> <p><신설></p> <p><신설></p>	<p>-----.</p> <p>1. <u>급식센터</u> -----</p> <p>-----</p> <p>2. <u>급식센터</u>-----</p> <p>-----</p> <p>3.·4. (현행과 같음)</p> <p>5. <u>농·축·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업체 등과 협의 및 계약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u> -----</p> <p>--</p> <p>⑨ <u>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급식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u></p> <p>⑩ <u>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u></p>
<p>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p> <p>① 시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식생활교육, 전통 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u>지원센터</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u>학교급식지원센터</u>의 효율</p>	<p>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p> <p>① -----</p> <p>-----</p> <p>-----</p> <p>-----</p> <p>----- <u>급식센터</u>-----</p> <p>-----.</p> <p>② ----- <u>급식센터</u>-----</p>

현행	개정안
<p>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p> <p><신설></p> <p>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세부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생략)</p> <p>②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분기별로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집</p>	<p>-----</p> <p>----- 일부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p> <p>③ 급식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교급식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서 정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p> <p>2. 유통 및 공급관리</p> <p>3. 김포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p> <p>4. 그 밖에 안정적 급식 공급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p> <p><삭제></p> <p>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 되,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p>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8.>

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2. 6. 28.>

③위원은 시·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시·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 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 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 마.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김포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수행하며 전통음식문화의 계승·발전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등에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등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개정 2016.10.31>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분담,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금액 산정,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어린이집·고등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1. 지원대상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시행 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급식소위원회의 공급자선정 및 검수계획서 제출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 교육 및 농정업무 실무과장
2. 김포교육지원청의 업무관련 과장
3. 학부모 단체 추천인
4. 농민(생산자)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시민단체 추천인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상정한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심의
3. 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와 지출정산 내역의 심의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식생활교육, 전통 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세부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분기별로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집·고등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요구할 경우 급식경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장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가 적발된 때에는 시정요구,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현황과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